

제264회 거창군의회의 임시회

조 례 안 상 정
(5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2-54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
2022-55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교육과)	19
2022-56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25
2022-57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나눔과)	31
2022-58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4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5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어려운 용어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괄정비대상: 12개 부서 21개 조례

나. 상위법령 등의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경우: 정부합동평가 대상

1)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제명 변경된 경우 정비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회계법 ⇒ 국가재정법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상위법령의 내용이나 용어 변경된 경우 정비

가) 공무원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계급별 여비 지급 구분 일부 정비에 따라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 여비

나)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사항 반영

다) 특별회계 설치 시 존속기한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장학금특별회계 삭제

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마) 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바) 자연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3)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변경 및 신설된 경우 정비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제36조제6항

다) 농지법 제34조 ⇒ 제32조

라) 건축법 제19조 ⇒ 제23조

다. 용어순화 및 문장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 정비 대상

1)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2) 한한다(한함) ⇒ 한정한다(한정함), 월 ⇒ 개월, 인 ⇒ 명

3) 의 규정에 의하여(의한), 의거 ⇒ 에 따라(따른)

4) 당해 ⇒ 해당, 이라 함은 ⇒ 이란, 잔여임기 ⇒ 남은 임기

5) 범위내 ⇒ 범위, 회무 ⇒ 업무, 날로부터 ⇒ 날부터

6) 한 때 ⇒ 한 경우, 기타 ⇒ 그 밖에, 그 밖의

7) 자 ⇒ 사람, 요하는 ⇒ 필요한, 에 불구하고 ⇒ 에도 불구하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5. 9.~5. 3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조(「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여비”로 한다.

제3조(「거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을 “퍼센트”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무원”을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중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를 “같은 사건을”로 “인”을 “명”으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 제1항 각호”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을 “명”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자”를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협의회간”을 “협의회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에 따른”으로 “실·과 보조기관등”을 “담당관·과 등 보조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에 의”를 “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타자등”을 “타자 등”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에 규정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밀업무에”를 “기밀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의 규정에서”를 “에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서”를 “에서”로 “이라 함은 실·과등”을 “이란 담당관·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협의회에서”를 “협의회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하되”를 “따르되”로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때”를 “ 경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입절차등”을 “가입절차 등”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협의회규정이”를 “협의회규정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규정이”를 “협의회규정에서”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를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 규정이”를 “협의회규정에서”로 “회의개최일”을 “회의 개최 시 개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협의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임 하여야 한다.”를 “선임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잔여임기”를 “남은 임기”로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을 “제4조제4항단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회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5조(「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거창군 새마을장학금 지

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갈음한다.”를 “갈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를 “경우”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삭제한다.

제6조(「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리개발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중 “현재액을”을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로 한다.

제8조(「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과 영 제36조제1항”을 “법 제35조제5항과 영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10조(「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자문단”을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을 “다만”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필위된”을 “공석이 된 경우”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본인이”를 “스스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를 “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를 “(안전점검 및 상담)”으로 한다.

제10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문단은”을 “군수는”으로 “비치”를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일시”를 “회의 일시”로 한다.

제12조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범위 내에서”를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1조(「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 따른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거창교육청 교육장”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

고 같은 항 제6호(중전 제7호)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조의2 조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기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으로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조 제목 “회의록의 비치”를 “회의록의 작성·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의 간사”를 “군수”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을 “작성·보존”으로 한다.

제13조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2조(「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조 제목,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제3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으로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을 “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법 제14조”를 “법 제19조”로 “의 규정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부수 되는”을 “떨린”으로 “참고·기타 「건축법 시행령」 이”를 “참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 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제13조(「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4조 조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2장 장 제목 “친환경상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을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이행”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부 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으로 한다.

제8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같은 조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1조 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실시할 수”를 “할 수”로 한다.

제3장 장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조 제목 및 본문, 제16조 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4조(「거창군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을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로 한다.

제15조(「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거창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령이”를 “법령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를 “미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행할”을 “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의 개정)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해를”을 “가뭄피해를”로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을 “규정함을”로 한다.

제2조 중 “양수기라 함은”을 “이 조례에서 “양수기”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한해지역”을 “가뭄피해 지역”으로 “군수는 기타”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한해 대책의 사용”을 “가뭄피해 대책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7조(「거창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촌용

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촌 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촌용수구역이란”을 ““농촌용수구역”이란”으로 “수계별 단위”를 “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용수라 함은”을 ““농촌용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촌용수운영”을 “농촌용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오염방지대책”을 “오염방지 대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촌용수시설”을 “농촌용수 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시설”로 “관련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를 “농촌용수 시설물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용수시설물”을 “농촌용수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때”를 “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측정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용수원 및 용수시설”을 “농촌용수원 및 농촌용수 시설”로 “[별표 1]”을 “별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조 제목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을 “목적 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용수 목적외”를 “농촌용수를 목적 외”로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용수사용”을 “농촌용수 사용”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조 제목 “용수구역의 관리협약”을 “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약”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촌용수구역내의”를 “농촌용수구역 내의”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제18조(「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을공동이용시설물(경로당, 마을회관등) 건축시 소요되는”을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건축시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를 “이란 「농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이 규정에 정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법」 제19조”를 “「건축법」 제23조에 따른”으로 “농업인 주택”을 “농업인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요하지 않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건축법」 제9조에 의한”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9조(「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제1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거창군”을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제4호 중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예방의약담당주사”를 “장기기증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에 대하여는”을 “에게는”으로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거창군 보건소”를 “보건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를 “이 조례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군내”를 “거창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팩”을 “묶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1조(「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 제목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거

창군 거창사건희생자합동묘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도”를 “에도”로 한다.

제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를 “에 따른 조치를 할 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유홍·기타”를 “유홍,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55	제 출 자	거창군수
----------	---------	-------	------

1. 제안이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학생일 경우에도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여건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학교 및 품목을 확대함(안 제2조·제3조)

1)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추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현행) 교복 구입비 ⇒ (추가) 일상복 구입비

나. 그 밖에 문장 및 용어 정비(제5조·제6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2년도 예산 24백만원 추경 확보예정(도비 1천만원)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

가) 예고기간: 2022. 6. 21.~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는 학교: 교복 구입비
2.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제1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군 또는 국외에서 군 소재 학교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복구입비”를 “교복구입비등”으로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본문,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교복구입비를”을 “교복구입비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상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른 일상복 구입비 지원은 2022년도에 입학하거나 전학 오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p>	<p>거창군 교복과 일상복 지원 조례</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p>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복을 입는 학교: 교복 구입비 2.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제1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p>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p>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군 또는 국외에서 군 소재 학교에 전학 오는 1학년 학생 <p>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현행	개정안
<p><u>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u></p> <p><u>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u></p> <p><u>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u></p> <p><u>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u></p> <p><u>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u>교복구입비</u>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생략)</u></p> <p><u>③ 군수는 신청서와 <u>교복구입비</u>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u>교복구입비</u>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u></p> <p><u>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u>교복구입비</u>를 환수하여야 한다.</u></p> <p><u>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u>교복구입비</u>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u></p> <p><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교복구입비</u>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u></p>	<p><u>지원받은 경우</u></p> <p><u>제5조(지원 금액)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u></p> <p><u>제6조(지원 절차) ① <u>교복구입비등</u>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u>교복구입비등</u>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 (현행과 같음)</u></p> <p><u>③ 군수는 신청서와 <u>교복구입비등</u>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u>교복구입비등</u>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u></p> <p><u>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u>교복구입비등</u>을 환수하여야 한다.</u></p> <p><u>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u>교복구입비등</u>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u></p> <p><u>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교복구입비등</u>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u></p>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일상복 구입비 추가지원

나. 관련 조문: 안 제3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교복+ 일상복)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22년)	2차 연도 (2023년)	3차 연도 (2024년)	4차 연도 (2025년)	5차 연도 (2026년)
계	346,800	330,000	330,000	330,000	330,000
도비	104,040	99,000	99,000	99,000	99,000
군비	242,760	231,000	231,000	231,000	231,000

3. 관련 의견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외의 일상복 구입비도 지원 확대
함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자 함

II. 2022년도 일상복 추가에 대한 비용추계 상세 내역

가. 중학생: (입학 62명+ 전입학 15명)×300천원 = 23,100천원

나. 고등학생: (입학 29명+ 전입학 10명)×300천원 = 11,700천원

다. 사업비: 34,800천원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5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거창군민의 시설이용료를 경감하고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며 카라반캠핑장을 폐지하고 야영데크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안 제3조 및 별표 1)

- 1) 카라반캠핑장 폐지 ⇒ 오토캠핑장으로 이용범위 확대
- 2) 야영데크 이용시간 조정

나. 실제 사용하지 않는 썰매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제4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다.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추가(안 제5조제3항)

- 1) 거창군민, 30퍼센트
- 2) 일부 누락된 보훈대상자, 50퍼센트

(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를 열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67조,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2~6.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

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2. 야영장
3. 썰매장
4. 축제극장
5. 거창목재문화체험장
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지 인근”을 “관광지 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 중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를 “제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 대상자는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영장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카리반캠핑장	비고
이용료	15,000	30,000	30,000	1박 기준 -1박 이용 시간: 그 날 14사 부터 다 음 날 13 시까지
<u>이용 시간</u>	<u>그날 12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u>	<u>그날 14시부터 다음 날 13시까지</u>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썰매장, 축제극장,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조(위치) 수승대관광지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제곱미터로 한다.</p>	<p>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2 일대 297,679 제곱미터에 둔다.</p> <p>② 관광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2. 야영장 3. 썰매장 4. 축제극장 5. 거창목재문화체험장 6. 그 밖에 관광지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p>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생략)</p> <p>③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p> <p>④ (생략)</p>	<p>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p>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내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신 설>

<신 설>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축제극장을 이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극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거창국제연극제 준비, 행사개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공목적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의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의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④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8조(위탁징수) ①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주민등록법」상 25세 미만 미혼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2.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3.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위탁징수) 군수는 시설이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5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 정비(안 제13조·제14조)
- 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16조)
- 다. 용어 및 문장 정비함(안 제17조·제18조·제21조·제22조)
- 라. 법령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제4조·제20조·제23조·제24조)
 - 1) 삭제: 당연직위원 임기, 위원회 수당
 - 2) 변경
 - (가) 법령의 정의와 같은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 표현방식
 - (나) 회의록 작성·보존 주체 간사 ⇒ 군수
- 마. 위원회 운영세칙 신설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30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2. 6. 15.~7. 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군민”으로 한다.

제2조 앞의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를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삭제한다.

제8조 조 제목 “(조성 기준의 설정)”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으로 한다.

제9조 중 “구성)”을 “구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등)”을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을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② 군민참여단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드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앞의 “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6조 조 제목 “(설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자문을 요구하는”을 “자문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친화도시·기업지원·일자리·안전·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
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간사)”를 “(간사 및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분과위원회는 제16조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제13조 개정규정에 따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군민참여단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p> <p>2.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p> <p>나. 공공이용시설 :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p> <p>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u>군의 모든 행정</u>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u>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u>하여야 한다.</p> <p>②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은 <u>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u>하여야 한다.</p> <p>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p>	<p><삭 제></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를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u>하여야 한다.</p> <p>② <u>군민</u>은 <u>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u>하여야 한다.</p> <p><삭 제></p>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6. (생략)

제9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말한다)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2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

제13조(구성 및 운영)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란 관내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제14조(활동지원)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다른 서포터즈의 모범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16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조(군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

② 군민참여단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30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민참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드는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16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신 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생략)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업무 관련 실·과·사업소장
2.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친화도시·기업지원·일자리·안전·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여성·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다양한 계층의 여성
 - 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 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생략)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4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 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5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이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군 농업인의 농외소득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이용 요건 완화 기준 신설(안 제10조)

- 1) 요건: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일 것
- 2) 절차: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3) 완화 사유: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6. 15.~7. 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를 “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u>산물</u> (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일 것. 다만, <u>부원료는 다른 지역 산물일 경우에도 가능하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0조(가공시설의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가공시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일 것 2. 가공하려는 주원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에서 생산한 <u>농산물일 것. 다만,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u> 3.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용제한 여부 등 판단 결정 후에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기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p>